#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67

발의연월일: 2024. 10. 10.

발 의 자:정성호·안규백·이수진

김정호 • 윤후덕 • 김영진

이연희 • 이기헌 • 최기상

박희승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의 100분의 5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특례에 비해 K-문화콘텐츠의 원형인 출판업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이 없는 실정임.

독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들의 독서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출판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하여 출판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5%에서 15%까지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고 추가로 국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판콘텐츠에 대하여 10%에서 15%의 추가 세액을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8(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출판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출판콘텐츠가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공제대상 출판콘텐츠
  -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 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추가공제 금액: 출판콘텐츠의 제작 목적(수험서, 참고서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은 제외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판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출판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8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5조의8(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
	<u>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
	판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출
	판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출판콘텐츠가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출판콘텐츠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

 판물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출
   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
   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
   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추가공제 금액: 출판콘텐츠의 제작 목적(수험서, 참고서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은 제외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출판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 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출판콘 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

<u>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